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기구·정원과 가축방역체제 강화를 위해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가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규정(안 제2조)

- 총 정 원 : 833명 → 845명 (증 12명)
- 집행기관 : 815명 → 827명 (증 12명)
- 의회사무기구 : 18명 → 18명

※ 신규정원 승인 내역

(단위:명)

구분	계	일 반 직						기능직	비고
		소계	5급	6급	7급	8급	9급		
계	12	10	1	2	3	1	3	2	
도라산평화공원 관리사업소	10	8	1	2	2	-	3	2	
문화체육과	1	1				1			
농 축 산 과	1	1			1				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- 동 개정조례안은 「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」 신설과 「가축방역 체계」 강화를 위해 관계법령 절차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과 경기도 지사로부터 지방공무원 신규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임.
-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,
-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·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8일과 7월 25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각각 승인을 받아 법적절차나 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.

지방자치법

제 103조 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.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 14조 (표준정원의 책정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·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·도지사는 정원책정의 적정여부등 그 검토결과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또는 9월에 하여야 한다.

나. 내용타당성

○ 동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건은

-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관리사무인력 10명과 문화체육과 통역요원 1명, 농축산과 가축방역요원 1명등 모두 12명의 정원을 신규 또는 보강차원에서 증원하는 것으로
-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관리와 통역인력은 민북지역의 각종 관광시설 유지관리와 방문 외국인의 안내 편익등 특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 「정원책정의 일반기준」에 따라 경기도 및 행정자치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책정되었고

- 가축방역인력도 구제역등 각종 전염성 가축질병의 발생·확산등 가축방역 업무의 수요증가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써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면에 있어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됨.